2024년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주요 고용지원금

NEWS LETTER for CEO

2024년 최저임금이 종전 9,620원에서 9,860원(월 2,060,740원, 인상율 2.5%)으로 인상되었습니다. 매년 인상되는 인건비는 소상공인 및 소규모 중소기업 사업주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. 더욱이 올해는 기존 지원금 제도 중 상당수가 축소되거나 종료되는 등 변경된 내용도 많지만, 신규 직원 채용시 인건비 지원금만큼은 놓치지 말고 사업주가 꼭 챙겨야 할 것입니다.

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

만 15~34세 이하의 취업애로 청년 정규직 채용시 인건비 지원

(1년간) 인당 720만원 (월 60만원 x 12개월), (2년 근속시) 인당 480만원 일시지급 참여신청: 청년채용 전 ~ 채용 후 3개월 이내

취업애로 청년이란

① 4개월 이상 실업상태 ② 고졸 이하 학력 ③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청년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후 최초 취업자 등

-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
- 지식서비스, 미래유망업종, 문화콘텐츠, 신재생에너지산업, 청년창업기업(39세 이하, 7년 미만 기업)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
-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2개월 이내 신청

- 지원제인 소비향락업, 국가 및 공공기관
 - 배우자, 직계존비속,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외국인



고용촉진장려금 2

취업 취약계층을 정규직 채용시 인건비 지원

(1년간) 인당 720만원 (6개월 단위 지급)

(특정 대상*) 인당 1,440만원 2년간 지원 * 기초생활수급자, 중증장애인, 여성가장

취업취약계층이란

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워크넷 등에 구직 등록 실업자(단,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및 II 유형의 청년유형은 제외) ② 구직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의 중증장애인. 여성가장, 도서지역 거주자

-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
- 지식서비스, 미래유망업종, 문화콘텐츠, 신재생에너지산업,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
- · <u>6개월 이상 고용 유지</u> 후 신청

3

- 지원제외 소비향락업, 국가 및 공공기관
 - 배우자, 직계존비속,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외국인, 고용 후 정년까지 2년 미만 근로자

이당 최대 1,440만원

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(푸른씨앗)

30인 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 지원

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부담금의 10% 각각 지원 (3년간)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인당 최대 80.4만원 지원 (연 26.8만원 x 3년)

- · 최저임금 130% 미만(월평균급여액 최대 268만원)근로자
- 사용자 부담금은 납입시점 결정(DC형 동일)
- 적립금 운영은 근로복지공단이 위탁운영



4

워라밸일자리 장려금(실근로시간단축제)

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인건비 지원

(1년간) 인당 360만원 (월 30만원 x 12개월, 3개월 단위 지급)

참여신청: 단축시행일 다음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, 근로자의 30% (최대 100명 한도)

- 전자카드, 지문이식, 모바일앱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근로자의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 관리
-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

- 지원제외 소비향락업, 국가 및 공공기관
 - 직전 3개월간 주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50%를 초과하는 사업장
 - 휴게시간을 늘려 실근로시간 단축하였거나 주 52시간 초과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
 -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시행일 이후 신규입사자, 월평균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
 -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



워라밸일자리 장려금(소정근로시간단축제)

가족돌봄, 본인질병 등 개인사정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도록 허용한 경우 인건비 지원

(1년간) 인당 최대 600만원 (월 최대 50만원 x 12개월)

장려금 월 30만원 + 임금감소보조액 월 20만원1)

주1)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한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참여신청: 단축시행일 다음달부터 **12개월 이내 신청**. 근로자의 30% (최대 100명 한도)

- ·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로시간을 주 15~30시간으로 단축근로 허용
- 전자카드, 지문이식, 모바일앱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근로자의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 관리
- 직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
- 최소 1개월 이상 단축 (임신은 최소 2주 이상)

- 지원제외 소비향락업, 국가 및 공공기관
 - 임금체불·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
 -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
 -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외국인

o)당 1년간 최대 600*만*의

6

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

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 지원

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80% 지원

- 월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 가입자
-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
- 직전 3개월 연속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



※ 모든 고용지원금 지원은 최저임금 준수, 4대보험에 가입하고, 임금체불이나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.